우수조달물품 지정·관리 규정

[시행 2025. 6. 2.] [조달청고시 제2025-17호, 2025. 6. 2., 일부개정]

조달청(우수제품구매과), 042-724-7283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(이하 "우수제품"이라 한다)의 지정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**제2조(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다음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.
 - 1. "수요기관"이란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2. "적용기술"이란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특허 등을 말한다.
 - 3. "기술심의회"란 제18조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기술심의회를 말한다.
 - 4. "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"란「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」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.
 - 5. "계약심사협의회"란「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 규정」(조달청훈령 제2011호, 2021. 9. 27.)에 따른 협의회를 말한다.
 - 6. "품명"이란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물품목록법"이라 한다)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, "세부품명"이란 같은 법 및「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말한다.
 - 7. "협업체"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의 추진기업과 최대 2개의 참여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.
 - 8. "협업사업"이란 추진기업이 참여기업과 제품개발, 원자재 구매, 생산,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 담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・생산・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 - 9. "추진기업"이란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 기업을 말한다.
 - 10. "참여기업"이란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또는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협업체에 참여하여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제조 기업을 말한다.
 - 11. "사전접촉"은 기술심의회 개최 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,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우수제품 신청인 또는 신청 제품을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12. "브로커"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우수제품 지정, 계약체결·계약이행 등의 과정,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3. "이해관계인"이란 우수제품 신청제품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우수제품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본인의 기술 간에 관련이 있는 자를 말한다.
- 14. "추가선택품목"이란 지정된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등으로 우수제품 본품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.
- 15. "신규 지정기업"이란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일 이후 처음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.
- 16. "기술소명자료"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말한다.
- 17. "품질소명자료"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품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적인 품질·성능 및 조달제품으로서 [별표 1] '나'에 열거된 시험성적서 및 평가보고서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.
- 18. "선택부품"이란 우수제품에 포함된 구성품 및 예비품 중 기술 및 성능 구현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추가선택품 목과 구분되는 상대적인 호칭을 말한다.

제2장 우수제품 지정

제1절 우수제품 지정신청

- 제3조(신청인) ① 우수제품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의 자격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따른다. 이 경우, 제5조에 따른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이 신청인이 된다.
 - ② 신청인은 신청 대상의 제조와 조달납품에 필요한 모든 인증, 권리,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.
 - ③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[별지 제1호의10서식]의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
 - ④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은 분할일로 부터 3년간 우수제품 신청을 할 수 없다.
 -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.
 - 1. [별표 2]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 '부적합'인 경우
 - 2.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인 경우
- 제4조(신청대상) ① 신청대상은 영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(이하 "제품"이라 한다)로 신청인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제품에 한한다. 단, 신청 제품은 2차 심사 전까지는 물품목록법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.
 - ② 영 제30조 제1항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.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에 따라 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제품(NEP) 또는 신제품(NEP)을 포함한 제품
 - 2.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신기술(NET등)이 적용된 제품
 - 3. 「특허법」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의 특허 또는「실용신안법」에 따른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등록실 용신안이 적용된 제품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저작권등록이 된 소프트웨어로서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(GS)
- 5. 「과학기술기본법」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
- 6.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한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으로서 판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(이하 "혁신제품"이라 한다)
-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다.
- 1. 핵심 적용기술이 시공・설치 등에 관한 기술인 제품
- 2. 동일한 세부품명번호(10자리)를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
- 3. 기존 우수제품과 용도 및 적용기술 또는 물품식별번호가 동일한 제품. 단,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된 경우를 제외한다.
- 4. 이동 또는 설치 · 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의 변형 가능성이 높은 제품
- 5. 영 제3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구성품과 유류, 의약품, 농약 등
- 6. [별지 제1호의7서식]의 제품규격서 상의 '주요자재소요량'에 기재된 부품 중 외국산 부품의 원가계산서 상 직접재료비 비율이 50%를 초과한 제품. 단, [별표 8]에 따라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.
- 7. 적용된 특허나 실용신안의 실시지역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품
- ④ 조달청 공고「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제품」에 해당하는 제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⑤ 신청인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구성품 및 예비품 등에 한해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 단,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(물품식별번호 기준)은 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에서 제외한다.
- ⑥ 제5항의 추가선택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야 한다.
- ⑦ 신청인은 제5항에 해당되는 구성품 및 예비품이 납품단가 또는 1회 납품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선택부품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제4조의2(신청제품의 특례) ① 조달청장은 다양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외에 영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범실시 대상 제품의 종류,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협업승인 등) ① 조달청장은 협업승인신청을 한 추진기업 및 2개의 참여기업(이하 "협업체"라 한다)에 대하여 협업 승인을 할 수 있다.
 - ② 협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추진기업은 1차 심사 통과사실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[별지 제2호의 7서식]에 따라 협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 - 1. 신청제품(세부품명)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신청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
- 3.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, 참여기업이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 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
- 4. 추진기업이 생산물품에 대한 제조등록을 보유한 경우
- ③ 제1항의 협업체로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추진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[별지 제2호의 9서식]의 협업 승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 (신청에 의한 협업 취소를 포함한다.)
- 1. 폐업・부도,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우수제품 생산・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
- 2. 협업체 간 협업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
- 3. 그 밖에 우수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
- ④ 추진기업은 우수제품 신청·지정·관리 그 밖에 협업체 관리 등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.

제6조(지정신청) ① 우수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우수제품지정계획 공고(이하 "공고"라 한다)에 따른다.

- ② 신청인은 [별표 1]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1항의 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하여야한다. 다만, 제4조 제2항 제1호, 제4호,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품질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조달청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.
- ④ 조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되,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. 다만, 제7조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규격서를 열람 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**제7조(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)**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품(이하 "신청제품"이라 한다)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지정심사(규격추가를 포함한다)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 - ② 조달청장은 서류접수 마감일로부터 1차 심사 전까지 제품 규격서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 - ③ 이해관계인은 [별지 제5호의 1 서식]에 따라 신청 제품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고,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단,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경우 제출의견이 반려될 수 있다.
 - ④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⑤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및 소명을 심사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부가설명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⑥ 조달청장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신청인 및 의견제출인에게 신청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, 유사제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2절 우수제품 지정심사

- 제8조(심사 절차) ①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기술·품질, 신인도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.
 - ② 1차 심사 중 기술·품질평가는 기술심의회의 심사 및 결정에 따르며, 신인도 평가는 소관부서의 장의 심사에 따른다.
 - ③ 2차 심사는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에 따른다.
 - ④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정제품을 결정한다.
 - ⑤ 조달청장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설명 또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에게 추가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가 설명 또는 자료는 제출된 제품규격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.
- 제8조의2(연장기간평가)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된 기간이 누적 7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기 간평가 대상으로 한다.
 - 1. 신청인의 우수제품 중 신청대상과 동일한 물품분류번호(8자리)에 속하는 우수제품의 지정기간(지정연장기간 은 제외)을 모두 합할 것
 - 2. 제1호의 기간에서 지정이 중복된 기간을 제외할 것
 - ② 연장기간평가는 지정심사와 동시에 실시하며,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지정연장 허용기간을 정한다.
 - ③ 제1항의 연장기간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[별표 5]에 따른다.
- **제9조(1차 심사)** ① 조달청장은 1차 심사 진행 전에 심사 방식을 대면심사와 비대면 심사 중에서 결정하여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수 있다.
 -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,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, 정보통신, 기계장치, 건설환경, 화학섬유, 사무기기, 과기의료, 지능정보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.
 - ③ 1차심사 대상은 지정을 신청한 제품 중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를 통과한 제품으로 한다.
 - ④ 기술·품질심사의 심사위원은 [별지 제2호의2서식]부터 [별지 제2호의4 '가'서식]까지의 '우수제품 지정 심사서' 및 '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 심사서'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. 단, 동일 제품(물품식별번호 기준)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(前回)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, 제품의 실질적 기술·품질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⑤ 신인도 평가 기준은 [별표 10]에 따른다. 단, 협업체의 경우 추진기업을 신인도 평가대상으로 한다.
 - ⑥ 기술·품질심사 결과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 점수의합이 70점 이상일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. 단,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제6호까지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각각 [별지 제2호의4서식] 및 [별지 제2호의4의 '가' 서식] 에 따라 심사위원 2/3 이상이 '적절'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.
 - ⑦ 조달청장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1차 심사 과정을 개인정보 및 경영·영업비밀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기록·공개할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⑧ 조달청장은 1차 심사결과를 1차 심사 결과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.
- 제10조(기술품질심사 생략·대체) ①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 신청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기술·품질심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청인은 기술·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직전 1년간(심사결과 통보일기준) 받은 심사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반영한다.
 - ② 제1항의 신청인이 기술·품질심사의 생략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직전 1년간(심사결과 통보일 기준)의 심사점수와 이번 회차의 심사점수 중 더 높은 점수를 선택할 수 있다.
 - ③ 기술품질심사 생략ㆍ대체의 경우 지정신청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료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인정한다.
 - 1. 기술소명자료 : 생략·대체할 당시의 차수와 동일하고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있는 유효한 기술소명자료
 - 2. 품질소명자료 : 생략 대체할 당시의 차수와 동일하고 유효한 품질소명자료
- 제11조(심사의 이월·보류) ① 조달청장은 신청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.
 - 1. 기술,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해당 회차의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
 - 2. 외국산 부품의 사용이 50%가 초과하는 사유에 대한 [별표 8]에 따른 소명이 불명확한 경우
 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2차 심사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.
 - 1.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관련 심판·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. 이 경우 보류기간은 해당 심판의 재결 또는 심급의 판결 등에 따라 적용기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로 한다.
 - 2.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
 - 3. 신청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
 - ③ 조달청장은 심사의 이월 · 보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,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차 심사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제12조(기술 및 규격의 확인) ① 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 특허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특허적용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라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은 2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③ 신청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적용기술, [별표 1]에 따라 제출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- ④ 신청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심사결과 및 제출한 심사자료 등을 반영하여 수정된 규격서를 조달품질 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실태조사) ① 조달청장은 제9조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「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」[별지 제1호 서식](제조공정표)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.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조달품질원장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의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[별지 제2호의 6 서식]에 작성하여 우수제품구매과에 송부한다. <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>
-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. <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>
- 1. 계약이행확인시스템 등으로 해당물품의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
- 2.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해 직접생산 충족여부가 확인된 경우
- ④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달품질원장에게 추가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4조(2차 심사)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제12조의 기술 및 규격의 확인과 제13조의 실태조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한다.
 - ② 계약심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공공조달품목으로서 적합성 및 적정성 여부
 - 2.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
 - 3. 신청인의 계약 및 제품관리 역량
 - 4.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
 - ③ 계약심사협의회는 경미한 미흡사항이 있어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제품에 대한 심의 재상정을 결정할수 있다.
- 제15조(지정 및 지정제외) ① 조달청장은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②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심사 중인 제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심사 도중 신청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
 - 2.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, 조달물자로서 부적합한 경우
 - 3. 신청인이 제3조의 신청인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 - 4. 심사 중인 제품이 제4조의 신청대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4조 제3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5. 특허적용확인서에 따른 특허적용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 또는 규격
 - 6. 신청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. 다만, 심사위원이 사전접촉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.
 - 7. 그 밖에 우수제품으로 지정함이 적합하지 않음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한 경우
- 제16조(통보 및 지정증서)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심사의 최종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 - ② 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2차 심사에 통과한 제품에 대해 [별지 제5호의 3서식]의 우수제품지정증서(이하 "지정증서"라 한다)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업체에 대해서는 추진기업에게만 [별지 제5호의 3 '가'서식]의 지정증서를 교부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[별지 제6호의1서식]을 작성하여 지정증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- 1.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
- 2.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
- 3.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
- 4.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업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
- ④ 조달청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적용기술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하여 지정증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.
- ⑤ 우수제품의 생산 중단 또는 사업 양도 시에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은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- **제17조(마크 사용)**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[별지 제5호의 4 서식]의 지정표시(이하 "지정마크"라 한다)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- ② 지정마크는 우수제품과 관련한 제품, 용기, 포장 및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으며, 그 이외의 물품 및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3절 우수제품 심의회

- 제18조(기술심의회)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(이하 "기술심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 - 1. 우수제품 지정 및 규격추가 신청제품의 기술・품질 심사
 - 2. 우수제품 지정 취소 및 재지정의 기술 ㆍ 품질 심사
 - 3. 특정 기술의 우수제품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
 - ② 기술심의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의 명부에서 심사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. 단,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회를 연기하고, 교섭과 선정을 새로이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.
- 제19조(심사위원 위촉관리) ① 기술심의회 심사위원의 모집, 선발, 위촉, 임기, 해촉 등 심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「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」을 따른다.
 - ②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가담할 경우에는 향후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.
 - ③ 조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부 지침 등으로 정한 금액을 심사위원 보수로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심사위원의 비밀유지의무) ①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.
 - ② 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해 [별지 제2호의1 서식]의 청렴서약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1조(심사위원의 제척·회피)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,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.
 - 1.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,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·단체와 심사대 상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2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신청제품의 감정, 변리사무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
 - 3. 우수제품 신청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 개발에 참여한 경우
 - 4. 평가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
 - 5. 그 밖에「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」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
 - ② 조달청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대상 위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제22조(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)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 - 1. 우수제품의 지정(규격추가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 - 2.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. 단,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효력 정지는 제외한다.
 - 3.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할 사항
 - 4. 그 밖에「기술 서비스 업무 심의회 운영규정」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
- 제23조(계약심사협의회)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 - 1. 우수제품 지정(규격추가를 포함한다) 및 취소 등 주요사항
 - 2. 우수제품의 이의제기,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
 - 3. 우수제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
 - 4. 「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」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
 - 5. 그 밖에 우수제품 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

제4절 우수제품 지정 및 연장

제24조(지정일) ① 우수제품의 지정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신규지정 :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 또는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60일, 90일, 120일, 150일, 180일 중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이 원하는 날
- 2. 우수제품업체의 합병 또는 분할, 포괄적 양도·양수계약 체결 등 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: 우수제품 지정증서 재교부일
- 3. 우수제품업체의 상태 변동이 있으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재교부하지 않은 경우 : 상태 변동일
-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우수제품의 지정일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원하는 지정일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25조(지정기간 및 연장·연장 제외)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,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연장 사유 및 기간은 [별표 6]에 따르며, 여러 사유가 해당될 경우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만 인정한다. 단, 지정기간이 한 번 연장된 경우 동일한 사유로 지정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없다.
 - ③ 제8조의2에 따른 연장기간평가 대상인 경우 [별표 5]의 평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수 있다.
 - ④ 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이나 우수제품업체가 [별표 7]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품질・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1. [별표 7] 제1호 : 관계법령에 따른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제한 등으로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 이 불가능한 경우,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「국가표준기본법」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
 - 2. [별표 7] 제2호 : 해당 우수제품의 기간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「국가표준기본법」제23조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시험·검사기관의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
 - ⑤ 우수제품의 지정 또는 계약의 체결·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, 조사, 심판이나 소송 및 제34조에 의한 재심사등으로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- ⑥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(연장기간 포함) 중 우수제품과 관련한 소송 등에 승소할 경우 지정기간의 소급을 신청할 수 있다.
- 제26조(연장신청) ①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 내에 [별지 제3호의 1 서식]의 연장신청서와 [별표 3]의 증빙서류를 공고 상의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소관부서의 장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지정기간 연장 및 연장보류 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연장 및 연장보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의 연장 결정에 따른 소요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한다.
 - 1.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 3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
 - 2.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보류한 경우
- 제27조(이의신청 및 처리) ① 우수제품의 지정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[별지 제5호의 1 서식]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구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- ③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④ 소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 상 기술·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술심의회의 심사를 요청할수 있고, 기술심의회는 [별지 제5호의2 서식]에 따라 심사한다. 다만, 기술심의회 심사결과가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⑤ 최종 심사결과의 통보는 제16조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.
- 제28조(규격 추가)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가 추가 지정을 요청한 제품(규격)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수제품의 추가 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기존 우수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규격이 유사한 경우
 - 2. 추가 규격의 규격서가 지정규격의 기술·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면서, 동등 이상의 기술·품질 수준을 가진 경우
 - 3. 기존 우수제품에 대한 재심사,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 - ② 규격 추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[별지 제4호의1 서식]의 신청서와 [별표 4]의 구비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규격추가는 규격서 확정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규격추가 지정심사는 우수제품 지정공고에 있는 1차 심사 일정에 따른다.
 - ④ 조달청장은 기술심의회에서 [별지 제4호의3 서식]에 따라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해당 규격을 추가로 지정한다. 다만, 규격 별 차이가 단순・경미하여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- ⑤ 조달청장은 제4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을 신청한 규격에 대해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 - ⑥ 조달청장은 규격추가 절차 중이라도 제1항의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
 - ⑦ 제6항의 규격추가 절차의 중지는 수사·조사 결과, 행정처분, 재결 또는 판결(하급심 포함) 등으로 규격추가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격추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3장 우수제품 사후관리

- 제29조(적용기술 등 유지의무) ①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의 적용기술・권리・규격 ・ 자격 등 지정의 근거가 된 제반사항을 지정기간 및 계약이행(또는 납품)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우수제품업체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해 변동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·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해당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·인증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.
 - 1. 우수제품 지정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
 - 2. 최초 지정 당시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
 - ③ 조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유지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제30조(규격서 확정 및 수정) ①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체결 전에 우수제품의 사전규격서와 기술·품질 심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납품가능규격을 최종 규격서로 확정한다.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조달품질원장은 계약상대자와의 의견 차이 등으로 최종 규격서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 지정 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규격서가 확정된 경우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품질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달품질 원장에게 최종 규격서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최종 규격서를 수정할 수 있다.
- 1. 규격의 추가지정이 있는 경우
- 2. 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의 추가·변경요청이 있는 경우
- 3. 「산업표준화법」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변경이 있을 경우
- 4.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 또는 직접 생산한 부품으로 변경하여 규격서 변경을 요청할경우
- 5. 일부 지정취소를 포함한 지정 범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
- 6. 그밖에 경미한 사항, 불분명한 사항 및 모순된 부분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- ⑤ 우수제품업체는 제4항 제4호의 변경을 할 때 사전에 지정담당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에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적발되면 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추가특수조건」에 따라 해당 계약의 거래 가 정지될 수 있다.
- ⑥ 지정담당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제4호에 따른 규격서의 변경을 할 때 관련한 제조 요건, 인증 및 계약금액 변동요인 등을 누락 없이 반영하도록 사전에 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- **제31조(사후관리)**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불만이 제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를 조달품질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, 시험검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생산 또는 납품현장, 납품된 물품과 관련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, 공장 변경, 부정·부당 납품(원산지 위반, 하청 생산, 직접생산 위반 등), 관련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있다.
 -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,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,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⑤ 조달청장은 제1항의 시험검사 및 제3항의 사후점검 결과를 지정 · 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- 제32조(조사 등) ① 우수제품업체는 조달청장(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)이 실시하는 우수제품관 련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② 조달청장은 신청인 및 우수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[별표 9]에 따라 등 급화하여 우수제품의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.
 -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및 부품의 원산지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우수제품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국내용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33조(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)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 및 계약상대자를 형사고발할 수 있다.
 - 1.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
 - 2.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경우
 - 3. 우수제품 지정 심사위원에 접촉하여 대가를 조건으로 지정심사와 관련한 사항을 알선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우수제품 지정과정에 개입한 경우
 - 4. 그밖에 우수제품 지정, 계약상대자의 우수제품 계약체결 · 계약이행 등의 과정,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
 -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에 대한 제1항의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34조(재심사)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이 된 이후라도 해당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기술・품질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기술심의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적용기술이 해당 우수제품에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할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2. 그 밖에 재심사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가 제9조제6항의 1차 심사 통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다. 단, 1차 심사 통과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 신인도 점수는 지정심사 당시의 점수를 적용한다.
- 제35조(경고)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할 수 있다.
 - 1. 제5조제3항 각호의 협업승인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 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 - 2. 제29조 제2항의 우수제품의 지정근거가 된 제반사항의 변동 및 [별표 1]의 지정서류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통보하지 않은 경우(단, 제29조 제2항의 단서 및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)
 - 3.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
 - 4. 제32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
 - 5.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에 연속 3회이상 '미흡' 평가를 받은 경우
 - 6. 수익배분 약정 등을 바탕으로 우수제품업체가 해당 우수제품의 제품 및 납품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업체가 수행한 경우
 - 7. 우수제품의 성능 미달 등이 확인된 경우
 - 8. 우수제품업체가 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
 - 9. 우수제품업체가 납품요구 받은 본품 이외의 다른 제품을 계약변경 없이 추가하여 납품한 경우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0. 우수제품업체가「물품구매(제조)계약추가특수조건」제8조의7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한 경우
- 제36조(지정효력정지)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 - 1. 우수제품이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추가특수조건」또는「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」에 따라 거래정지된 경우 : 거래정지 조치 해제일까지
 - 2. 법원 및 특허심판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이 확인된 경우: 해당 사유가 확정된 때까지
 - 3. 우수제품 및 우수제품 업체에 제37조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: 지정취소시까지
 - 4. 우수제품업체가 제3조의 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: 신청인의 자격 회복시까지
 - 5.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업체의 변경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: 협업변경 승인일까지
 - 6. 제30조 제2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지정효력 정지를 요청한 경우 : 최종 규격서의 확정일까지
 - 7. 우수제품 지정·계약·납품 등과 관련한 브로커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수사·공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이고, 해당 절차에서 우수제품 업체의 관여 사실이 특정된 경우 : 수사·공판절차에 따라 해당 사실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
 - 8. 그밖에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: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
 -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, 법적 분쟁의 결과 우수제품업체가 승소할 경우 기존 지정기간에 지정효력 정지기간만큼을 추가한다.
- 제36조의2(신청에 따른 지정기간 중지) ① 우수제품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지정기간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업체 귀책이 아닌 사유로 피해 복구·인증 획득 등이 지연될 경우 기술서비스국 심의를 통해 지정기간 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.
 - 1.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산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여 우수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
 - 2.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수렴 절차를 결여한 신규 인증 품질 기준 등의 요구
 - ② 제1항의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중지한 경우,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지정기간을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의 내용은 해당 우수제품에 부정당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37조(지정 취소)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우수제품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신청서류를 위·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 정을 받은 경우
 - 2. 우수제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
 - 가. 제4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. 다만, 적용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핵심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나.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다. 제4조제3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
- 라. 신청제품이 이동, 설치 시공 과정에서 성질 또는 상태 등이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곤란한 경우
- 마. 제11조의 심사 이월제품이 이전 회차 신청제품과 상이함이 확인된 경우
- 바.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사. 외국산 부품의 비율이 50%를 초과한 제품이 [별표 8]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아. 제4조제4항에 따른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3. 우수제품업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가. 부도, 파산, 폐업, 청산 등이 확인된 경우(다만,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름)
 - 나.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해 관계 법령의 허가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
 - 다.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거나 우수조 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. 단,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,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소프트웨어 제 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 - 라. 관계법령에 따라 우수제품의 직접생산을 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
- 4. 우수제품업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 - 가. 총 지정기간(연장기간 포함) 중 제35조의 경고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 - 나. 제17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부정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
 - 다. 우수제품업체가 지정기간 중에 우수제품 지정증서에 명시된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2회 이상 또는 제재기간 합산 6개월 이상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
 - 라. 우수제품업체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담합,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② 조달청장은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우수제품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③ 소관부서의 장은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위해 계약심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정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④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우수제품의 계약

- 제38조(계약 체결)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업체(이하 "계약상대자"라 한다)가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 또는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5조에 따라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다만, 계약상대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.
 - 1.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
- 2.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의 재심사 또는 수사・조사・심판・소송・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- 3. 제30조제1항에 따라 최종 규격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
- 4. 제4조제4항에 따른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② 계약상대자는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심사협의회가 정한 날부터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계약 체결의 효력은 지정기간 시작일부터 발생한다.
-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특허등록원부
- 2. 원가계산서 및 거래실례가격, 구매실례가격 등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격자료(추가선택품목 및 선택부품 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)
- 3. 「산업표준화법」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및 법적 의무인증에 대한 증빙자료
- 4. 시스템장비의 구성품 등이 수입품일 경우 공급확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
- 5. 관련 기술 및 품질인증서, 면허 등에 관한 증빙자료
- 6.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
- ④ 제3항 제2호의 가격자료는 계약요청일 전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자료를 규격(모델)별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출하는 자료가 원가계산자료인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재별 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수명주기 가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.
-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각호의 자료에 대해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을 경우 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.
-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거나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.
- ⑦ 조달청장은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적정한 계약관리를 위해 계약규격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⑧ 제1항의 계약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」,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일반조건」,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특수조건」, 「물품구매(제조)계약 추가특수조건」에 따른다.
- 제39조(계약단가의 산정)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물품이 공사 또는 설치에 관련될 경우 투찰금액 등 제출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「(계약예규)정부 입찰・계약 집행기준」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
 - 2.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에 관한 관련 비용
 - 3.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
 - 4.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
 - 5. 그 밖에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제반 비용
 -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38조제3항제2호의 가격자료 등의 1차 검토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의 사업자 선정은 조달청 내자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.
- **제40조(협업체의 계약)** ① 제5조의 협업체가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추진기업이 계약상대자가 되며 해당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지정된 우수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참여기업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38조를 따른다.
- 제41조(계약기간) ① 제38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(또는 단가계약)의 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
 - ②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.
- 제42조(수정계약 및 재계약)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- 1. 우수제품 지정규격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
 - 2. 계약상대자가 계약수량 증감, 단가 조정, 1회 최대납품요구량 변경, 그 밖에 계약조건의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
 - 3.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
 -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체결된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이 처음으로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, 계약상대자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계약 또는 기존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③ 계약담당공무원은재계약을 체결할 때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 각호의 서류 중 가격자료 등 계약내용의 변동을 확인할 용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43조(계약체결 절차의 중지)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(재계약 및 수정계약을 포함한다)의 체결 절차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. 단, 규격 추가로 인한 수정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.
 - 1. 우수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2. 재심사 또는 우수제품과 관련한 수사・조사・심판・소송・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개시된 경우
 - 3. 지정효력 정지 또는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4. 우수제품의 재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
 - 5. 외부인의 부당한 청탁이 있거나 브로커 등의 개입이 발생한 것이 확인될 경우
 - 6. 그 밖에 계약체결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
 -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의 중지는 수사·조사 결과, 행정처분, 재결 또는 판결(하급심 포함) 등으로 계약체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요청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44조(계약의 해제·해지)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·해지할 수 있다.
 - 1. 제37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
 - 2.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 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 계약과 동일한

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

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.

- 3.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가격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허위 서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
-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1. 계약조건에 따른 거래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- 2.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경우로 그 제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
- **제45조(추가선택품목의 납품)** ① 추가선택품목의 납품 1회당 구매금액은 소액수의계약 한도인 추정가격 기준 2천 만원 이하로 제한한다.
 - ② 조달청장은 별도 구매하는 추가선택품목의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 계약번호(9자리 기준)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의 합계가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.
- **제45조의2(선택부품의 납품)** 수요기관은 우수제품 본품을 구매하거나 본품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선택부 품을 구매할 수 있다.
- 제46조(집중도 관리) 조달청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과도한 납품 집중이 발생하거나 특정 세부품명의 우수 제품 납품비중이 과도한 경우 등에 대해 단가계약 중단, 납품요구 차단 등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5장 보칙

제47조(제도운영)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- ② 조달청장은 정부 시책 등의 국가적 정책방향을 우수제품지정관리제도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③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·납품관리 등을 위해 계약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정비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. 단, 같은 법 제37조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 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48조(홍보)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홍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- 1.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및 지원
- 2. 우수제품 지정·관리제도의 안내를 위한 홍보물 등의 제작·배포
- 3. 우수제품의 기술·품질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
- 4. 신규 지정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
- 5. 그 밖에 우수제품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
- ② 조달청장은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제49조(비밀유지) 우수제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.
- 제50조(재검토기간) 조달청장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5-17호,2025.6.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- **제2조**(적용례) ① 제45조와 제45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「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」(2021-29호, 2021. 8. 9.)를 따른다.
- ② 제 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「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」(2023-40호, 2023. 7. 21.)를 따른다.

법제처 19 국가법령정보센터